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8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조직개편('19. 1. 1.)에 따른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의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원시설 중 청소년건강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시설의 주관부서를 여성권익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지원시설 중 청소년건강센터의 명칭을 “십대여성건강센터”로 변경함(안 별표)
- 나. 지원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을 부적합하게 준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정비함(안 제7조 및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5. 9. ~ 5. 29) 결과: 의견있음(별도 첨부)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경고·시정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경고·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의 주관국(과)란 중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권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시설명란 중 “청소년건강센터”를 “십대여성건강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략)</p> <p>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원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지원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p> <p>③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p>	<p>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u>④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은 시장이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u></p> <p>제9조(지도·감독) ① (생략)</p> <p>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u>경고·시정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교부받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u>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교부한 예산을 환수하여야 한다.</u></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예산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규정을 준용한다.</p>	<p><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9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경고·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③ 시장은 제7조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u>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u></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별표] <b>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제5조제3항 관련)</b>				[별표] <b>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제5조제3항 관련)</b>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주관국(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생략)	(생략)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권익 담당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소년건강센터	(생략)	(생략)		◦십대여성건강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생략)	(생략)		◦관악늘푸른교육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생략)	(생략)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p>십대여성 일시지원 센터 (류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십대여성일시쉼터’ 기관 명칭을 현재 명칭 그대로 사용하거나 ‘십대여성일시보호센터’ 및 ‘십대여성쉼센터’로 변경 요구</li> <li>-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유형인 ‘청소년쉼터(일시쉼터)’로 변경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십대여성들이 거부감 느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li> <li>- 이용자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명칭을 그대로 유지</li> </ul>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사항에는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명칭 변경
    - 청소녀건강센터 ⇒ 십대여성건강센터
  - 주관부서 변경 :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권익담당관

### 4. 작성자

- 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심효진(☎02-2133-5334)